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19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화장품 기재사항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등 표시 의무화	3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21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24.
- (3) 회 부 일 : 2024. 9.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화장품 기재사항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등 표시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사항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안 제10조제3항·제40조제1항제5호의3),

화장품 표시에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기재사항을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의2. (생략) <신설> 6.·7. (생략) ② (생략)	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제40조(과태료) ①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및 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위한 준비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및 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기재·표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및 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0조제3항¹⁾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표시할 때,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시·청각장애인의 화장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그런데, 화장품 제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이 있는바, 종류가 다양한 모든 화장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점자 등의 표기를 의무화할 경우 화장품 제조업체에 기술적·비용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술적으로, 화장품의 용기·포장은 그 모양과 재질이 다양하므로

1)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그 특성에 따라 점자 등의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²⁾, 화장품 산업은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어 제품정보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제조번호·사용기한 등의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변환용 코드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비용적으로, 점자 및 음성·수어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미지 생성 등의 여건을 함께 구축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인프라가 부족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는 업체의 생산·설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개정안은 업체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으나, 전체 화장품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약 94%임³⁾을 고려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한 모든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화장품의 약 65%가 동시에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⁴⁾, 수출되는 제품에 한글점자를 표시할

2) 자료: 대한화장품협회

- 물휴지, 마스크팩 등의 제품은 수분과 외부 오염으로부터 제품 보호를 위하여 폴리백 포장 등을 사용하는데 폴리백 포장 등은 기술적 한계로 점자 표시가 불가능함.
- 굴곡이 있는 용기나 작은 원형용기의 경우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어렵고 굴곡된 표시 점자 및 코드는 정보 내용 인식이 어려움.

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업체 중 94%(11,088개소)가 실적을 10억원 미만으로 보고하여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함.
-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기준은 매출액(1천억원 미만)·자산총액(5천억원) 이외에 지분 소유,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판단함.

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생산 및 수출 실적>

- (생산) '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은 14조 5,102억원(공장출고가)
- (수출) '23년도 수출실적은 85억 달러*(11조 960억원, 통관 금액 기준)
 - * 공장출고가 기준 71억 6,752만불(9조 3,733억원) 추정(FOB(본선 인도조건) 기준 15% 계산시)
 - * 환율 1달러 = 1305.41원('23년)

경우 해외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유럽·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서도 화장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의무 병기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국제조화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법제적으로는 i) 개정안 제10조제4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5)에 따른 중소기업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 ii) 안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관세법」 제154조6)에 따른 보세구역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유사 입법례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발명진흥법」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화장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이 있고 영세업체가 많아 다양한 용기·포장에 점자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술적·비용적 부담이 될 수 있음.
 - 화장품은 수출 산업으로 제품 대다수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어 수출 제품에 한글점자 표시는 글로벌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점자 등의 표시 의무화 사례는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화장품마다 다른 정보를 용기와 포장에 점자 등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포장재 및 생산설비 변경 등의 비용이 증가하여 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하면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대한화장품협회) 시·청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모든 화장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화장품 업계에서는 장애인단체 등과의

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유사 입법례로서,

「폐기물관리법」 제39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수입 검역) 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협력을 통한 점자스티커/점자태그 보급 사업 확대 등 장애인의 정보제공과 권익 증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노력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 제조업은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으로, 점자 등의 표기를 의무화할 경우 업체에 포장재 관리와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생산제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또한,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도 화장품에 대하여 이러한 강제 규정 및 벌칙은 없으므로 국내 외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비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